

## 2. 開發利益還收에關한法律施行規則中改正令

建設部令 第495號 1991. 11. 29
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유원지설치사업등에 있어서의 부과대상범위) ①영 별표 1 제11호의 사업명란의 유원지설치사업과 공원사업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”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.

②영 별표 1 제11호의 사업명란의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·개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2.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집하장을

설치하는 경우

3.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4. 도·소매업진흥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경우
- ③영 별표 1 제11호의 사업명란의 “제1호 내지 제10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”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.

제3조의3(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)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.

제4조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, “15일”을 “25일”로 한다.

제14조중 “15일”을 “25일”로 한다.

[별표 1] 내지 [별표 3]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**유원시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**

(제3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유 원 지 설 치 사 업	공 원 사 업	
근 거	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(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제48조제1항제4호)	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	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
부과대상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희시설</li> <li>• 골프연습장</li> <li>• 휴게실·숙박시설(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)</li> <li>• 식당 및 경마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희시설</li> <li>• 골프연습장</li> <li>• 대중음식점</li> </ul>

[별표 2]

**토지형질변경허가·산림훼손허가·농지전용허가 또는 초지전용**

**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**

(제3조의2제3항 관련)

구 분	부 과 대 상 시 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·공동주택·기숙사·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</li> <li>•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2항·제14항·제15항 및 제30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(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)·위락시설·관람집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</li> <li>•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3항·제18항 및 제1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설·창고시설 및 주유소</li> <li>•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20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회버스정류장·화물자동차정류장 및 자동차관련시설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</li> <li>• 그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</li> <li>•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시설</li> </ul>

[별표 3]

**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면적**

(제3조의3 관련)

건축물	부과대상토지면적	
공장외건축물	도시계획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용주거지역: 건축물바닥면적의 5배</li> <li>• 중심상업지역·일반상업지역·근린상업지역·준주거지역: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</li> <li>• 일반주거지역·일반공업지역·준공업지역·전용공업지역: 건축물바닥면적의 4배</li> <li>• 자연녹지지역·생산녹지지역·보전녹지지역: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</li> <li>•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: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</li> </ul>
	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</li> </ul>
공장용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</li> </ul>	

□ 개정이유 □
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(1991. 9. 13. 대통령령 제13465호)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 □

- 가. 휴양콘도미니엄 등 유원지설치사업과 공원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(제3조의2 제1항).
- 나. 화물적하시설·농산물공판장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업무설비를 구체적으로 정함(제3조의2제2항).
- 다. 토지형질변경허가·산림훼손허가·농지전용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시설을 정함(제3조의2제3항).
- 라.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을 정함(제3조의3). 〈건설부 제공〉